

한국의 로스쿨 설립과 성공적인 운영방안

한상희*

I. 들어가기

우리나라의 법학교육 및 그 연장에서의 법조충원의 제도는 1969년 변호사법 개정에 따른 사법연수원제도의 도입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대학이 법조인을 양성하던 사법대학원제도가 사법연수원제도로 바뀌면서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사법연수원에서의 법조양성실무교육으로 이원화되고 양자는 철저하게 분절된 구조를 이루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가 중심이 된 사법관료 양성체계는 법학교육으로 하여금 사법시험에 철저히 종속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법률수요에 법학교육 및 법조양성의 제도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행적 결과를 야기하여 왔다. 1994년의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의 법학교육개혁의 논의 아래, 오늘날까지 급변하는 시민社会의 구조변화(정보화, 전문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양과 질의 측면에서 보다 제고하기 위해 현재의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가 법학교육 및 법조양성체계의 개혁방안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의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보면 주로 법학교육 및 법조양성체계의 기본적 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어졌을 뿐, 그 각각의 대안들을 실천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하기 위하여 어떠한 실행대안들이 있으며 어떠한 방안이 보다 합리적 · 효율적이며 보다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는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법학교육주체를 포함하는 법조직역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그 실천적 집행안을 확보해내기가 매우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이 글은 사법개혁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안을 중심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조인 선발 · 양성체계의 개혁방안을 더불어 검토함으로써 그 제도이행에 필요한 제반의 정책대안을 모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목적과 그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의 구현에 필요한 각종의 도구적 요소들-입학총정원문제, 인가기준, 교육내용 · 방법의 문제, 학술로서의 법학연구·교육의 문제 등을 간략히 다루어보고자 한다.

II. 법학전문대학원 - 그 제도목적과 실천과제

1. 법학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기본적으로 법학교육은 전문직업교육으로서의 성격과 더불어 건전하고도 지도적인 시민의 육성을 지향하는 교양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겸비한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학교육은 국가 혹은 사회의 지도층을 양성하는 교육이거나 혹은 법률실무가의 양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법학교육이 사법시험과 같은 법조총원제도에 종속되어 전문직업교육으로서의 성격은 물론 교양교육으로서의 특성조차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즉, 법학교육은 그동안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 교양교육체계와의 유기적 연관의 단절문제를 들 수 있다. ①그것은 일반적인 인생관 · 세계관 혹은 국가·사회관을 형성하기 위한 일반교양교육과의 연계가 부실함으로써 법률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전제인 지식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자질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②각종 인문과학, 사회과학 혹은 자연과학 등 전문적 법률지식을 구축함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으로서의 교양교육-학부교육 자체가

부실함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법률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법학교육이 불가능하였으며, ③이러한 연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필수적인 직업적 윤리교육의 부재현상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문제점은 드러난다.

둘째, 지나친 시험중심의 구조로 인하여 대학에서의 법학교육 자체가 왜곡되는 양상을 야기한다. ①우선 법학교육 자체가 스스로의 교육과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사법시험에 종속되어 사법시험 과목 위주의 법학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편성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②또한 법학교육과정이 학술·교양교육/직업교육의 틀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한 채 단순히 기본법과목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하는 백화점식의 교육과정 · 교육내용으로 획일화됨으로써 교육목표 자체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③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직된 법학교육체계는 사회적으로 새롭게 문제되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경직성을 보인다. ④또 법학과 여타의 학문영역이 지나치게 단절됨으로써 학제간의 연구나 사회 · 세계 전반에 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¹⁾

2. 법조양성제도의 문제점

우리의 법조발달사를 보면, 일제의 식민지정책으로부터 해방이후의 과대성장국가의 권위주의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법조가 정치적(혹은 경제 · 사회적) 권력자의 의사와 유착하면서 그 권력의 한 손으로 작동하면서 가장 적나라한 방식의 독재체제를 구축함에 기여하면서 법은 국민생활과 그대로 유리된 채 국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왜곡된 법현실을 야기함에 기여하여 왔다. 이는 역사의 질곡속에서 식민지 지식인의 현실주의적 선택으로 남았던 것이 일제의 법관료로 편입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상황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 상층부의 법집행을 매개하는 존재로서 법조의 위상 또한 변함이 없었음에 서부터도 입증된다.

1) 사법연수원의 제도는 이를 더욱 강화한다. 모든 예비법조인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조의 관료주의를 배태시키는 초기단계의 과정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우선, 사법연수원의 과정은 실무와 소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사법관행들을 그대로 전수시키면서 동시에 간적으로 법조의 일체감을 강화한다. 기존의 권위주의적 법관행을 확대재생산하는 틀이자, 동시에 최고엘리트라는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기반하는, ‘한 솔밥’을 먹는 폐쇄집단의식을 주입하는 것이다. 이에 법조는 봉건적 신분으로 재구성되며 이 사법연수원의 과정은 법조로 하여금 서비스의 주체가 아니라, 모심과 섬김의 대상으로 의식화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특히 하향식의 근대화의 방식을 거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상당히 강력한 민족적 공감대를 가지는 법감정이 구축될 수 있었던 독일과는 달리, 급격한 식민화에 이어 일말의 반성기회도 없이 서구적 법체계가 권위주의정권의 억압정치와 함께 국민에게 부과되었던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계몽적 군주의 개발독재를 전제로 하는 법관료모델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조의 잠재적 권력성의 문제는 이미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의 법조는 길드적인 집단이기주의와 정치권력의 권위주의적 통치의지와 결합하면서 그 자체 일사분란한 통제의 대상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법조는 권력에 종속되어, 국민위에 군림하는 ‘작은 권력’의 專斷者가 되었던 것이다.

3. 개혁의 방향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법학교육의 개혁을 말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 연장선상에서 실질적으로 법학교육제도의 틀을 규정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혁을 같이 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양자의 개혁의 중심에는 법조 및 사법의 민주화라는 이념적 정향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정치권력의 시녀화, 종속화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우리 법조의 구태를 멀치고, 법조의 인식과 판단의 준거를 관료주의적 법도그마에 둘 것이 강요되었고 그것이 사법시험제도와 교과서 법학·수험법학의 이름으로 법학교육제도 깊숙이 침투한 것이 현재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구조의 개혁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고 세련된 인식에 두게 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법감정과 정의의 이념을 법체계로 전달할 수 있는 시민의 법대표자로서의 법조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요청된다. 즉, 종래 국가에 의하여 설정되어 왔던 법관념을 시민사회에 투입하는 하향식의 법관료가 아니라, 역으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요청들을 수렴·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올바른 질서와 정당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지도자 내지는 법대표자로서의 법조를 양성할 필요가 나타나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법학교육의 개혁과 법조양성제도의 개혁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나 법조의 경쟁력강화 등의 문제는 이러한 법조의 민주화에 의하여 뒷받침될 때에야 비로소 명실상부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조양성제도의 개혁

① 법권력의 이전: 국가로부터 시민사회로

이러한 요청은, 법조가 시민사회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을 때, 법을 발견하고 집행하는 권리의 주체는 바로 시민사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한다. 즉 법운용의 권력을, 법관료를 통하여 하향식으로 통치하는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자율적,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법감정, 정의감정을 사법시스템에 투입하고 전달하는 민주적 사법절차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법의 실체를 시민사회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일련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의 법인식을 가공하여 국가통치 내지는 관리의 차원에서 하향식으로 전달하는 법조가 아니라, 역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의 갈등이나 대립을 법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이를 분쟁해결의 차원에서 처리하는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하여 시민대중을 설득하고 그의 지지를 획득하는 사법구성원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법조양성을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법조와 시민사회의 동일성을 강화하고, 이로부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법조의 독립을 확보하며, 법조의 시민사회대표능력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사법서비스의 질적 확대

- 전문성있는 법률가의 양성 의뢰자와 일반대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생활관계들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가의 법체계내에 편입시키는 작업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법률전문가(Legal Profession)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 창조적 · 적극적 법적 사고능력(Legal Mind)의 함양: 이에 법률전문가로서의 법조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생활관계들을 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에 관한 폭넓은 이해와 법적 논리구성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창조적 · 적극적 법적 사고능력이라 함은, 아직 매개발된 법영역을 스스로 발견하고 탐구해내며 이를 법적으로 가공하고 법체계내에서 그것을 대변함으로써 시민사회가 요청하는 정의사회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대응(responsiveness)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 일반인중의 한 사람(소위 Generalist)으로서의 법조: 이렇게 법조가 사회내의 다양한 생활관계를 법적으로 대표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능

력이 고양되어 있어야 한다. 즉, 법조는 가장 기본적·일상적 수준에 있어 일반대중의 정서와 생활감각에 익숙하여야 하며, 이를 법적으로 대표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 다양하게 특화된 법조의 양성: 뿐만 아니라, 법조가 시민사회의 대표자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종래 민·형사 등 국가사법권력의 집행업무에 한정되었던 구태를 벗어나, 새로이 등장하는 법적 수요부분들-행정, 상사, 의료, 소비자보호, 여성·아동보호, 장애인등 소수자보호, 환경, 시민운동, 복지, 레저·스포츠, 문화·예술, 국제거래·통상, 금융, 특허, 정보, 물류·선물, 외교·안보, 입법, 정책기획 등-에 대하여 스스로를 특화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③ 사법서비스의 질적 확대 - 법조인 수의 확대

물론 이러한 법률전문가로서의 법조를 양성하고 이들이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유연하게 사회적 법요청을 대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현재 과점의 상태에 있는 법률시장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공급부분에 있어서의 자유·공정경쟁의 체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법조인수의 절대적 확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④ 법조의 경쟁력강화 및 국가경쟁력 증진

국제화·지구촌화를 계기로, 특히 신자유주의의 추세에 편승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법의 국제화·보편화현상-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법의 적용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진행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세계경제질서에 보다 적극적으로 편입될수록 그 가능성은 보다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대내적으로는 법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법조를 중심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를 취할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⑤ 법조 직업윤리의 강화

법조, 특히 변호사의 직업윤리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기본요소라 할 것이다. 또한 법조의 직업윤리가 확립되는 것은 곧장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이어지며, 이는 법치주의의 실천을 향한 디딤돌이 된다. 특히 법조

의 직업윤리는 개인적 윤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조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구조적 · 제도적 규범체계로서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법조양성과정과 법조충원 과정에서 법조직업윤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기회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법학교육체제의 개혁

① 법학교육의 전제로서의 법률가상: 법조충원제도와 법학교육의 관계에 관하여 현재의 송무중심의 소극적인 법률가상을 탈피하고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가상이란, ⑦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폭넓고 세련된 인식, ⑧국가적 및 지역적 차원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문제해결 능력, ⑨국제적인 감각, ⑩투철한 서비스정신과 민주적 책임윤리 등을 갖추고 다양한 사회적 법률수용에 부응하여 그들의 주장과 요구와 이익을 우리 법체계내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법률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가를 충원하고 양성하는 체계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요청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① 타학문과 법학과의 균형적인 발전과 대학교에서의 법학교육정상화를 위해 사법시험의 응시자를 법학전공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 ② 현재 사법시험의 성격이 사법연수원 입학시험이 되어 사실상 판검사임용시험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를 명실상부한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변호사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 ③ 변호사자격시험으로서의 사법시험은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를 평가하기보다는 창조적 법적 사고능력(Legal Mind)과 직업윤리의식을 평가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② 법학교육의 내실화 방안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은 이념적 지향들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는 그에 상당한 시설 및 자원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본인식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① 현재 전국적으로 97개의 법과대학 · 법학과가 난립하여 있는 체제로서는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체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전

제로,

- ④ 새로이 도입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수월성 있는 전문가교육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물적·인적 시설을 확보한 후 설립되어야 하며,
- ⑤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적·전문적인 Governance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 ⑥ 이 과정에 법학계는 물론 법조실무계 및 시민사회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민주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에의 접근성 확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법조인의 충원·양성과정은 사회지도적 계층으로의 진입을 담보하는 통로로서 작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양성과정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평등하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⑦ 우리 사회의 지역적 불균형상태를 고려, 법학전문대학원을 지방에 균형적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 ⑧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하는 등 그들의 법학 전문대학원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일련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④ 기타 부차적 지향점

그외 현행의 사법시험제도로 인한 법학교육의 과행화현상과 양산된 고시낭인들로 인한 국가경제적 낭비요인들을 치유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에서의 법학이론교육과 법조계내에서의 법률실무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전체적인 교육비용의 절감이라는 점에서도 시급히 요구된다.

III. 구조의 문제: 입학총정원과 관련하여

1.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직무유기

지난 2004. 10. 4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관한 회의의 결과

를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법조양성제도로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되, (다수의견에 의하면) 그 “총 입학정원은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현란한 생색내기의 뒷면에서 법조인구에 관한 논의는 슬그머니 소거해 버리고 말았다. 1968년의 3선개헌과 더불어 사법연수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법조는 철저한 관료주의모델에 입각하여 양성·충원된 이래, 국내 유일의 공인된 폐쇄집단으로서의 법조에 대한 혁파의 논의조차도 하지 않은 채 아젠다 논쟁 속에서 이 법조인구의 문제는 또다른 “사법개혁위원회”의 구성으로 미루어야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법개혁논의가 1994년 처음 시민사회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면서 법조인구의 숫자문제는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의 하나였다. 혹은 유일한 개혁과제였다고 하여도 무방할 정도였다. 그와 비슷한 중량을 가지고 제기되었던 Law School안도 그 동조자중의 일부는 법조인구확대의 일환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의 사법개혁위원회는 이 문제를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문제에 흡수시키면서도 그 실체에 관한 논의는커녕, 아예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기로 함으로써 차후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차단해 버리고자 하는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그 주관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법조집단이라 할 수 있는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는 이 법무부가 사법시험의 합격자수를 확대하기 위한 이니시에티브를 제기할 전망도 난무한 터에다가 그 합격정수의 결정에 관여할 권한을 가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조차 이 문제에 개입할 것 같지 않다. 바로 이 때문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총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음모이다. 그것은 별도의 사법“개혁”위원회가 탄생하지 않는 한, 혹은 정치권에서 어떠한 “입법자의 결단”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현재의 합격자수를 최소 2011년까지는 동결시키는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총정원의 결정기준

실제 위의 사법개혁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총정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결정한 사항-그것이 다수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은 한 가지의 점에서 결정적인 판단오류에 빠져 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법조인력충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학교육의 문제라는 점이다. 환연하자면 그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주어진 법학교육여건을 감안하면서 법학교육의 필요성·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법조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만 판단되어져야 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자의 문제-입학총정원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조인력충원의 문제가 결정되어야 하며 양자의 결정과정에서 파생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바로 변호사자격시험 합격률의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입학총정원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법학교수와 법과대학 등 법학교육에 종사하는 자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부차적으로 그 수료생들의 진로와 관련한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입학총정원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①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월성있는 교육내용과 다양한 교육과정을 확보함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 등의 교육능력, ②교육프로그램 등 피교육자 및 사회내에서의 교육수요, ③법학전문대학원 상호간의 적절한 경쟁을 유발하는 한편 나름의 특성화 전략 등으로 법학전문대학원간 분업의 체제가 형성될 수 있을 정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수를 확보할 필요성, 그리고 ④향후 우리 사회에서 예상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관련하여 적정한 법조인력수급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

이를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대학 현황에 비추어 살펴 보자.

법과대학의 입학정원: 11,390명

법과대학의 재학생수: 63,370명

전임교수수: 921명

(교수 1인당 학생수: 약 70명).

여기서

- ① 법률실무가출신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으로 임용(또는 과견)되는 경우를 전 교원의 20%정도로 예정하고,
- ② 교수 1인당 학생수를 12명 또는 15명으로 하며,
- ③ 현재의 전임교원의 약 1/3은 계속하여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을 담당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계산이 가능해진다.

- ①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수 = 600명 + 120명(실무가출신교원 20%) = 720명
- ②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수 = 720명 × 12명(혹은 15명) = 8640(혹은 10,800)
- ③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수 = 8640(혹은 10,800) ÷ 3년 = 2880명(혹은 3600명)

즉, 우리나라의 현재의 법학교육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전제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최대한 2,880명(교수 1인당 학생수를 12명으로 할 경우) 혹은 3,600명(교수 1인당 학생수를 15명으로 할 경우)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계산은 우리나라의 법과대학 내지는 법학과(부)의 전반적이고도 총체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교수들간의 이동이 가장 유연하다고 가정했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위의 ③의 전제는 거의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며 약 40 내지 50%정도의 법학교육자원들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법조인력수급에 대한 고려가 없이 즉, 준칙주의의 방식으로 시장경쟁에 맡긴다 할지라도 2002년 현재의 자원을 전제로 할 때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최대의 입학총정원은 2,500명에서 3,000명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여기에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향후의 수요를 감안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물론 존재한다. 비록 그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결정에 충분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필요조건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수료률, 변호사자격시험의 합격률 등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때, 수료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병역,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탈락하는 경우와 낙제, 유급 등 학사상의 이유로 강제적으로 탈락시키는 경우를 모두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예측에 있어서는 변호사자격자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뿐 아니라, 변호사자격을 갖지 아니한 법학전문대학원수료자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수료률과 합격률의 예상치를 감안,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총정원에서 변호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의 수를 계산하면 다음의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입학정원	수료자 (탈락률 10%)	합격률 50%	합격률 67%	합격률 80%
1,200	1,080	540	724	864 ²⁾
1,500	1,350	675	905	1,080
1,800	1,620	810	1,085	1,296
2,000	1,800	900	1,206	1,440
2,500	2,250	1,125	1,507	1,800
3,000	2,700	1,350	1,809	2,160
3,500	3,150	1,575	2,111	2,520
4,000	2,600	1,300	1,742	2,080

위의 표에 의하면 매년 1,000명씩 합격시키는 현재의 사법시험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총정원은 합격률을 80%로 할 때에는 약 1,500명수준이며, 합격률이 67%(즉 응시자의 2/3이 합격)일 때에는 1,800명의 입학총정원을 예상해 볼 수 있다.³⁾ 또 매년 변호사자격 신규취득자의 수를 1,500명으로 한다면, 합격률 67%일 경우 2,500명의 입학총정원을, 그리고 합격률 80%일 경우 2,000명 정도의 입학총정원을 예정할 수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이때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탈락률은 10%로 함)

변호사시험합격률에 따른 입학총정원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			
	50%	67%	80%	
변호사자격 신규취득자수	1,000	2,222	1,658	1,389
	1,200	2,667	1,990	1,667
	1,500	3,333	2,488	2,083
	1,800	4,000	2,985	2,500
	2,000	4,444	3,317	2,778

- 2) 이 점에서 항간에 대법원 등이 입학총정원을 1,200명 정도로 하고 합격률을 80%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고 하는 언론보도는 문제가 있다. 만일 그러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입학자는 모두 변호사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셈이 되며(이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나마도 현재의 사법시험합격자수보다 적은 수의 변호사를 배출하게 된다.
- 3)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법개혁논의의 결과 변호사자격취득자의 수를 3,000명으로 한다고 결정 하였다는 언급은 중요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 실제 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견서는 “새로운 사법시험의 합격자수를 연간 3,000명으로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빠른 시일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상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못 박고 있다. 즉, 3,000명이라는 숫자는 하한선이며 따라서 향후의 추이에 따라 그 이상의 변호사총원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IV. 인가기준의 문제

1. 설립의 문제: 인가주의 vs. 준칙주의

대체로 대학/대학원의 설립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①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면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칙주의와 ②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후 서류심사, 현지 실사 등을 통하여 해당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인가주의의 방식이 있다. 물론 이 양자의 사이에는 느슨한 인가주의 혹은 엄격한 준칙주의 등 다양한 중간영역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구분에서 중요한 것은 인가주체 혹은 승인주체(현재로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의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가능성성이 어느정도 열려 있는가 일 것이다. 준칙주의의 경우와는 인가주의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제도로서 거론되고 있음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 준칙주의에 의할 경우, 전국의 97개 법과대학(법학과·법학부)의 상당수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수 있어 기회의 공평한 분배와 법조저변을 대폭 확대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남설 및 법학전문대학원간의 경쟁과잉으로 인한 법학교육의 부실화와 더불어 현재의 사법시험제도가 야기하는 폐해를 그대로 존치하게 되는 등 법조인공급체계의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한다면 적어도 현재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이에 대하여 준칙주의의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통제는 가능하지 않는다는 역대안도 제시되지만, 그 또한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강화된 기준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다른 대학/대학원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설립기준 정도로 준칙주의를 마련한다면 전술한 남설·경쟁과잉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그 설립기준보다 강화된(적어도 ‘훨씬’ 강화된 수준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기준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차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법조인력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① 필요한 물적·인적 시설의 확보와 ②적절하고도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구축, ③수월성 있는 교육방법의 개발 및 실시 등을 유효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고, 나아가 ④그 입학정원의 조정을 통한 법조인공급체계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⑤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초한 지방대학육성의 관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지방에 균형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인가주의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또 하나 부가해 두어야 할 것은 설립주체의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시학원 혹은 단설대학원(대학원대학)의 설립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소위 콘소시움의 방식에 의한 설립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직까지는 미해결의 상태로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교육정책의 난맥으로 인하여 법과대학(법학부 · 법학과)이 남설로 인한 폐해에 더하여 고시학원들의 존재가 법학교육 및 법조충원의 과정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단설대학원의 설립은 당분간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의 질과 윤리를 담보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정책과 통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민사회에 의한 감시와 시장에 의한 통제인 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 후자의 메카니즘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콘소시움에 의한 방식은 법과대학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 장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콘소시움의 방식이 단순한 학점교류정도에 그치는 것은 결국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남설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입시 및 졸업사정을 공동으로 하며, 학사의 공동(즉 faculty의 결합)이 보장되는 체제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2. 인적 시설

법학전문대학원에 필요한 교원인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그리고 그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아직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지 아니한 수준에서는 설불리 내세우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대체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제시한 「학사후법학교육」체제에서는 다음과 같

4)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인가함에 있어서는 인가주체가 미리 인가의 기준을 제시하여 희망하는 교육기관들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 ① 교수 대 학생 비율은 1 : 12로 한다.
- ② 최소 교수수는 25명으로 한다.
- ③ 교수 1인당 조교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여기서 ①의 문제에 관하여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교수 1인당 학생 15명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적어도 법실무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고등전문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면 일반적인 대학원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는 상회하는 기준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내용이 실무지향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교육방식 역시 교수와 학생이 근접한 대면관계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만큼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은 적을수록 바람직하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대학시설기준령에 따르면 단설대학원대학의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은 일반 학부(교수 1인당 학생 25명)의 1/2로 한다고 한 만큼, 그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최소한 교수 1인당 학생 12명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다른 문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②최소교수수이다. 실제 이 문제 또한 심각한 교육공학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간단히 다음과 같은 셈법에 의하여 추산은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begin{aligned} &\text{법학전문대학원의 이수학점수를 } 96\text{학점(새교위 안)으로 할 때} \\ &\text{연간 개설학점수는 선택과목을 감안, 최소한 그 } 4\text{배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며} \\ &\text{교수 1인당 연간 책임수업시수는 } 9\text{시간으로 할 때,} \\ &96\text{학점(시수)} \times 4 \div 9(\text{시간}/\text{교수}) = 42.7(\text{명}) \end{aligned}$$

여기서 선택과목을 축소하여 2배수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교수수는 20명을 상회하게 된다.(또 여기에 대학원장 등 보직담당교수를 제외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나 최소한 25명의 수준에는 도달할 필요가 있게 된다)

3. 물적 시설

물적시설에 관하여서는 법학전문교육에 필요한 독립된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사법개혁위원회의 안이며 그 외에는 대학시설기준령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校舍) 면적 12m²라는 기준만 있을 뿐, 별다른 기준(안)이 제시된 바는 없다. 다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시설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① 대형강의실 : 강의실은 Socratic Method의 법학교육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교수와 학생간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체제가 보장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특히, 계단식 강의실구조와 고정좌석제는 이를 위한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다.

② 모의법정 : 최소한 대륙법계의 법정구조와 영미법계의 법정구조를 겸비할 수 있는-즉, 집기 등의 이동으로 쉽게 양자간의 변화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③ 법학도서관 및 전자열람실 : 법학도서관은 의학도서관(Medical Library)과 같은 맥락에서 전문대학원에서 필수요건으로 요구되는 시설이라 할 것이며, 이에는 법학에 전문지식·능력을 가진 전문사서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

④ 임상실습실(Legal Clinics) : 법조실무의 축이 지난날의 송무중심에서 오늘 날 법률정보수집·분석, consulting중심으로 이전하고 있는 만큼, Interview · Counselling, Investigating · Researching, 협상 · 조정 · 중재 등 실무법조인과 더불어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실습과 조사·토론을 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4. 보론 - 등록금의 문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반대하였던 주장의 논지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교육비용의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이 있다. 즉, 이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인적 · 물적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야기하는 막대한 교육비용을 학생에 전가할 경우 학기당 약 500만원이상의 비용을 부담케 함으

로써 경제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비부담은 법조직역에 대한 또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되고 법조인의 인적 구성 자체가 중산층 이상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법의 귀족화를 야기,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의 문제는 분명 나름의 근거는 있는 것이되 다음의 설명에서 보듯, 보기 나름으로는 지나치게 과장된 느낌이 있기도 하다.

① 대체로 대학의 경상운영비는 교수 1인당 1억원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수를 40으로 한다면, 총경상운영비는 40억원정도의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여기서 건물 등의 고정자산비는 산입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기본재산이며 초기투자로서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교 등의 인건비는 그 자체 장학금의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굳이 산입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학의 재정중 학생의 등록금부담율을 우수한 사립대학교를 기준으로 약 50% 정도로 하고, 교육관계법에 의거, 재학생의 10%에 대하여 등록금을 면제하는 것을 고려하면 학생수 450명의 법학대학원의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담은 다음과 같이 된다.

$$40 \times 0.5(\text{등록금의 } 50\%) \div \{450 \times (1-0.1)\} = 494\text{만원}$$

즉, 법학대학원에서의 학생의 연간 등록금은 494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대학원의 등록금 약 500만원 수준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다. 문제는 등록금부담률을 어떻게 최저화 할 것이냐이지 학생의 등록금 자체가 지나치게 높아서 법조의 귀족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우려를 할 것은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부장학금(직업교육시설인 만큼 외부장학금의 수혜가능성이 일반 대학교에 비하여 훨씬 높음)이나 기존의 학자금융자제도, Part Time 근무(예컨대, 법학대학원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수 1인당 조교 1명으로 할 경우 40명의 학생이 그 급료로 학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됨), 혹은 공익법무관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전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근무하도록 하는 계약제(현재 ROTC가 그 예이다) 등의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얼마든지 경제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교육과정 · 방법의 문제: 법률「실무교육」의 의미

미국식 모델에 바탕을 둔 전문법학대학원제도의 도입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장점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면서도, 우리의 법체계상으로 적합하지 않고 외국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는 예가 없으며, 따라서 그 성공가능성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에서 항간에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이 10년이나 지체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제도의 취지와 내용 자체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미국식 Law School의 교육체제는 case의 분석을 중심으로 개별사건의 실용적 처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제와 어긋난다는 주장은 이러한 반대론의 대표적인 논거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법학교육이 지향하는 목적과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오해에서 연유한다. 오늘날의 미국법학교육체제가 19세기 중엽이후 기존의 변호사사무실 중심의 도제식 교육방법을 불식시키면서 그 나름의 전문적인 법지식을 구축하는 가운데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주장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Langdell교수가 주창하였던 case method는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변하고 있는 기본적이고도 객관적인 일반법원칙을 발견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가 주창하였던 ‘법학의 과학화’라는 명제는 바로 이 점을 말한다. 우리의 교육내용과 유사하게 해당 법부분에 통용되는 일반적 법원칙이나 법이론을 구축하고 그것이 개개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차이들과 어떠한 연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 교육방법의 핵심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case분석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이 개별사건의 구체적 차이들이 전체적인 법질서나 법원칙 또는 법이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그것에 어떠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여야 하는가이다.

미국의 법학이 변론술에 치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것은 이 차이들의 인식과 평가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일반적인 법원칙 · 이론-즉, 추상적 법에 포섭하는 방법과 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고 공감을 구하

는 일종의 절차적 합리성의 추구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점에서 미국식의 교육 방법이 대륙법계와 대립하지 않는다는 결론도 얻어질 수 있다. 마치 우리 법제에서 대립당사자주의가 모순일 수 없듯이, 그리고 독일법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 독일법 전통을 허무는 것이 될 수 없듯이, 개별사건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그 것에 추상적 법을 적용함으로써 그 법적 평가를 행하는 것(나아가 대중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등의 모순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미국식의 법학교육방법의 장점인 실무능력 내지 법응용능력의 함양이라는 목적을 위하여는 체제 자체의 변화보다는 기존의 법과대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 또한 마찬가지의 오해에서 기반한다. 실무교육이 부실하다는 미국Law School에 대한 기성법조계의 비판은 이 점을 대변한다. 엄밀히 보아 사회적 실천을 위한 실무교육·훈련은 기업과 같은 사회부분이 담당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기관이나 국가가 담당할 것인가는 커다란 사회정책의 한 부분이겠지만, 여하튼 명확한 것은 미국의 Law School에서 중점을 두는 법응용능력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실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사회적 욕구나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포섭하며 그에 반대되는 주장에 대하여 방어력과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인식과 사건들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 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는 Law School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장점을 가지는 것이다. 예컨대, 낙태사건에서는 의학적 지식과 법지식을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하며, 출판물음란죄사건에서는 문학과 단순음란표현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어야만 이사의 법적 책임을 따질 수 있고, 인터넷의 구조와 proxy server의 특성을 말할 수 있어야 디지털저작권의 범위를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프로스포츠선수의 경기능력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은 기존의 우리 법과대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아무리 뜯어고친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각각에 상응하는 기초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자를 상대로 법학교육을 행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법학이라는 학문영역 자체의 손상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나치게 실무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기초법학이나 법이론의 탐구가 상대적으로 경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 역시 나름의 설득력은 있으나, 이는 하드웨어적이라기 보다는 교육과정과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는 점을 놓친다. 현재의 법과대학체계에서는 교육과정이 고정되면서 동시에 교수의 전공영역까지도 폐쇄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민법전공교수는 언제나 민법만 가르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폐쇄적 전공체계가 고정되지 않는 한 이 주장은 언제나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필요한 것은 학자적 관심에서 연유하는 부단한 문제제기와 그 규명작업이다. 그리고 이것은 연구실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의실에서도 요구된다. 미국의 Law School에서도 여전히 법이론이나 기초법의 탐구작업이 지속되고(오히려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업적도 충실·풍부하다), 그러면서도 “교수의 직이 보장”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학자적 직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도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또 실제 감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수들에게 자유로운 강좌개설권을 부여하고 그를 통하여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교육과정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오히려 전문법학대학원체제에서 보다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법학대학원체제에서는 학제간의 연구활동이 보다 원활해진다. 다양한 출신기반의 학생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우선 그러하거니와, 법학전공자의 타 대학진출까지도 현재보다는 훨씬 용이해지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⁵⁾ 명실상부하게 종합응용과학으로서의 법학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지식의 공유를 통하여 법학의 확장과 더불어 법학의 심화연구까지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법철학과 인문과학의 연계나 자연과학적 변화에 대한 법가치론적 접근(생체복제를 생각해보라)이 지금의 수준 이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미국식의 전문법학대학원을 설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교육

5) 학부과정에서 일반교양으로서의 법학교육이 필요한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고, 전문법학대학원 체계가 되다 보면 일반학부과정에서의 법학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Law School에서는 ‘별볼일’ 없었던 법사회학이나 비판법학과 같은 학문영역들이 사회학과나 인류학과 등에 포섭되면서 법학자들의 연구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점을 예증한다.

과정과 교육방법, 교재 그리고 교수요원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반론을 들 수 있다. 미국의 Law School에서 수학한 교수요원들은 적지 않지만, 실제 거기서 교육을 담당해 본 경험이 있는 교수요원은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과 타당성을 가진다. 그에 상당한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시급히 요청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술하였듯이 전문법학대학원의 교육목표와 내용에 대한 오해도 이러한 주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Law School의 교육내용이 현장식 실무보다는 법응용·적용능력의 함양에 중점이 놓여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륙법식의 추상적 법의 응용과 적용능력을 중심으로 할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물론 상당한 기간동안의 시행착오는 각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기존의 교수요원으로써도 얼마든지 감당가능하다. 단지 문제는 기존의 교육방법과 교육내용-그리고 현재의 준신분적 지위-에 안주하고자 하는 보수적 태도일 따름이다. 수입법학, 편집법학, 수험법학의 오명을 떨쳐버리려는 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교육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지적 자원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이 사법시험제도와 연결될 경우 지금의 법과대학체제와 마찬가지로 사법시험준비를 위한 고시학원으로 변형될 것이라는 우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전제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단시안적 기우에 불과하다. 물론 전술적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당히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는 자격시험격의 변호사시험제도로 변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는 전문법학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성취도의 측정 및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의 측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VI. 법조 충원제도의 문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법학교육제도의 개혁이자 동시에 법조양성 및 충원제도의 개혁을 의미한다. 종래의 사법시험의 시험이라는 점의 방식에 의한 법조양성·충원제도라고 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제는 선의 방식 즉 계속적 교육과정을 통한 법률가 양성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법조충원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① 그 중에서도 현재의 사법시험을 명실상부한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1의 과제가 된다. 즉, 그것은 현행 사법시험처럼 미리 최소한의 합격생수를 정해 놓고 그 정수의 범위내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절대적인 점수를 추출, 이 점수로 결정되는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 법조인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기본지식의 구비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으로 보아야 한다.

② 또한 이 변호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졸업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가 법조인의 양성을 과거처럼 시험이라는 점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대학원과정에서 학사후 법학교육의 방식에 의하여 집중적인 교육으로써 양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 자격도 이러한 교육의 과정을 거친 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⁶⁾

③ 응시회수와 응시기간은, 일본과 같이 총 5년의 범위내에서 3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며 병역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응시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응시회수에만 제한을 두는 절충적인 방식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법문화를 고려한다면 졸업시로부터 변호사자격취득시까지 지나친 공백기간을 가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응시회수의 제한과 더불어 응시기간의 제한도 두는 것으로 하고, 만일 응시회수의 범위내에 있는 자가 이 응시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단기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④ 변호사자격시험의 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본과목으로 지정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정하되, 이를 대단위의 계열로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복합적, 종합적 법 판단능력을 검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와 같은 헌법, 행정법과 같은 구분은 없애고 통칭적으로 공법으로 한다든지, 혹은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을 통

6) 바로 이 점에서 이중적인 통로를 열어놓고 있는 일본의 법학대학원제도는 상당한 하자를 안고 있는 것이 된다.

합하여 민사법으로 하는 방식이 적당하다. 즉, 시험의 틀을 과목 또는 단행법 단위로 책정할 것이 아니라 사건을 중심으로 동원가능한 모든 법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⑤ 또한 변호사자격시험은 기존의 사법시험과는 달리 객관식과 단답식을 주로 하고 논술식 시험을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목합격제를 실시함으로써 그 시험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⑥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변호사자격시험의 과목 · 내용과 방식 등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즉, 변호사자격시험의 관리주체를 현행 사법시험의 관리주체와 동일하게 법무부로 하되,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호사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방향 등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과목이수증명서 혹은 교내 시험의 합격증명서-를 법무부등 변호사자격시험주관기관에서 보고받아 변호사시험의 합격여부 판정에 산입하도록 하는 제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이 기초법학분야나 특수법학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한편, 학생들에 대하여서는 시험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⑦ 법학전문대학원체제 하에서는 ‘교육후 선발’을 본질로 한다는 점, 다수의 변호사배출을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기회의 제도 등의 관점에서 볼 때 합격자의 수는 최소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70%선 이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호사자격시험은 그 합격여부만 판정하고 그 점수는 폐기하는 것으로 한다.

VII 결 론

이상에서 거칠게나마 법학전문대학원의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제시해 보았다. 실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제안이 시작된 1994-5년도의 사

법개혁논의의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반대론은 성공가능성의 의심에 기반한 것이었다. 즉, 그 반대론은 그런대로 설득력을 가지는 주장으로 제시되었으며, 일반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정책대안들이 그러하듯이 확실한 성공가능성을 갖춘 안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문제의 처리를 위한 문제제기로서는 실패하였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제기는 성공할 것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 불확실성이 주는 기회비용이 과연 얼마인가를 따지는 것이다. 지금 현재의 법조양성체계가 야기하는 손익과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확률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존의 법조양성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사법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비용과 확률, 그것을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 고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과 비용을 상호비교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기존의 법학교육체계가 가지는 한계-교육 및 입시제도의 과행성, 법학교육 및 대학교육전반의 부실화, 소위 고시산업으로 인한 인적·물적 자원의 누출, 폐쇄적 법조체제의 형성요인화, 법조의 시대적 적응능력 저하 등-는 이미 개선정도의 처방으로서는 극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이상에서 언급한 것들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제자리를 잡기 위한 아주 적은 부분의 조건에 불과한 것들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건들은 계속되는 논의의 과정을 통해 정리되고 세련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위에서 언급되지 못한 것들-학술로서의 법학교육·연구의 문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승격되지 못한 법과대학(법학부 · 법학과)의 문제, 법학전문대학원을 위한 교재개발등의 문제-을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논의의 장이 필요할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거론되어야 할 것은 이 제도를 맞이하는 우리 법조인의 태도이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법조체제에 비추어볼 때 엄밀히 보아 전문법학대학원의 성공여부는 그 hardware의 ‘이질성’이나 software의 ‘준비부족’과 같은 제도내부적 요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제도와 법조일반간의 유기적이고 상호적인 협력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달려 있다. 학계와 실무법조계 뿐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부문까지도 상호 교류 ·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법학교수에게 법조실무(특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법관 또는 그의 연구관)

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혹은 법조실무가를 교수로 영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한 예에 불과할 따름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법학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법학자와 법조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실무가들이 하나의 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법공동체 속에서 공동의 법담론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모두의 각성이 선행되어야만 그 결과 또한 제도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⁷⁾

7) 뿐만 아니라, 이 전문법학대학원의 운영과 그 제도적 의의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위의 협력체계를 향시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체제(예컨대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축은 이 제도의 성공여부에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에서부터 교육, 졸업, 그리고 변호사자격부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요청되는 governance의 체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대법원-변협-법학계에 이르는 일련의 의사결정의 틀을 구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적절히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